

제 3 0 6 회 임 시 회
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

다시 뛰는 **공정도시서울**

예비비 사용 보고

2022. 3.

문 화 본 부

돈화문 민요박물관(현 우리소리박물관)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보고

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관련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현장사무소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집행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림

□ 예비비 사용 개요

- 추진근거
 -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결정금 지급 예비비 확보 요청(건축부-2590호, '22.2.21.)
 -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(박물관과-2146호, '22.2.22.)
- 추진내용 : 서울우리소리박물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금액 지급
 - 대상/기간: 흥용종합건설 주식회사(원고)/ 2022. 2. 28.까지
- 소요예산 : 24,000천원

□ 예비비 승인액 및 사유

- 예비비 승인액 : 24,000천원 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예산현액	승인액		승인일자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	
계				20,975,489	221,816	221,816	
일반예산 (예산담당관)	예비비	예비비	일반예비비 (801-01)	117,133,824	-	-24,000	2022.2.24
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(박물관과)	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	서울우리소리 박물관 운영	배상금 (305-01)	-	24,000	-	

○ 예비비 사용 근거 및 사유

- (근거)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함
- (사유) 본 지출은 소송결과(화해권고결정)에 따른 건설사 측에 임대료 지급을 위한 별도 확보된 예산이 없고,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기측성 및 소송종결에 따른 지출에 해당